

동력자원부고시 제84-8호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석유안정기금 운용관리요령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석유안정기금운용관리요령 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83-16호) 중 일부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4년 4월 16일

동력자원부장관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사용가능액 및 지원내용('84. 3. 1 ~ '84. 6 말)

가. 기금사용가능액 : 441억원

나.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단위 : 억원)

사 업 명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응 자 대 상 자	유자취급은행
1.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가.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및 시설의 생산 및 시설설치	305 ¹⁾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천하는 실수요자	산은 및 기은
2. 석탄산업의 육성	나. 에너지절약형 신공정의 도입등 하계저탄자금지원('83유자액상환 금액)	136	대한석탄공사	산은
계		441		

주 1) '83 지원금액 238억원중 '84년 2월말 현재 미집행분 201억원 포함

※ 지원금액은 실제 기금조성규모에 따라 조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고시 제84-9호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및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고시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징수방법 및 법 제17조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 기준을 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년 4월 16일

동력자원부장관

1.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금액

가. 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은 수입석유 1 배럴당 미합중국통화 1.5\$ (비축기금 0.7\$, 안정기금 0.7\$, 개발기금 0.1\$)에 통관일 이내의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나. 다만, 벙커씨유 및 프로판, 부탄수입시에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통과일 이내의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벙커씨유 : 1 배럴당 0.3\$ (비축기금 0.1\$, 개발기금 0.1\$, 안정기금 0.1\$)

(2) 프로판, 부탄

(가) 장기저가수입분

1 메트릭톤당 188\$ (비축기금+개발기금 : 88\$, 안정기금 : 100\$)

(나) 현물시장고가수입분

1 메트릭톤당 188\$ (비축기금+개발기금 : 88\$, 안정기금 : 100\$)에 현물시장 고가수입 CIF가격과 장기저가수입가격과의 차이의 60%를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추가하되, 국내수급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에 대하여는 비축기금과 개발기금을 합한 금액 1 메트릭톤당 88\$을 징수하고 안정기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 징수

1) 기준 CIF가격보다 저가도입분 : 1 메트릭톤당 100\$

2) 기준 CIF가격보다 고가도입분 : 1 메트릭톤당 100\$ - (실도입 CIF가격 - 기준 CIF가격) × 1.2055

· 실도입 CIF가격은 "LPG in World Markets"지에 발표된 선적된 달의 CIF 일본도착 최고가격을 상한선으로 하되 선적된 달의 일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전월의 실적치를 준용하고 프로판과 부탄중 함유종의 일본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우디 공시가격의 프로판·부탄가격 차이를 기준하여 산출적용

○ 기준 CIF가격

- 정유사 도입분 : 프로판 497,620원/톤, 부탄 496,910원/톤을 기금납부일의 환율로 환산한 \$화 금액에서 188\$/톤을 차감하고 이를 1.2055로 나눈 금액

- 정유에너지(주)도입분 : 프로판 264.80\$/톤, 부탄 289.87\$/톤

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석유류제

품 가격고시대상이 아닌 유종으로서 가공하여 일반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특수석유제품(석유 화력용 유험함량 0.3% 이하인 저유황 벙커씨유, 아스팔트 에멀존, 아스팔트 콤파운드, 하이솔벤트, 페트로울럼 벤진, 에비가스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

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통관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석유수입업자(수입금의 징수유예 및 면제대상은 제외한다)가 영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3. 원유수입에 따른 손실보전기준

가. 영 제1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 추가금운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기준

(1) 추가운송비의 지급기준

가) 원유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하여는 석유정제업자가 해당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배럴당 운송비와 당해사가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배럴당 운송비와의 차이를 아래 기준에 따라 매 항차별로 산출 보전하되 연말에 정산한다.

○ 항차별보전기준 : (다변화원유 배럴당운송비 - 다변화 원유도입전 분기의 중동원유 배럴당운송비) × 다변화 원유수송비 실적급일의 환율 × 1.0774 × 다변화도입물량

○ 연말정산기준 : (매항차 다변화원유 배럴당운송비 - 연간중동원유 배럴당운송비) × 다변화원유운송비 실적급일의 환율 × 1.0774 × 다변화도입 물량

나) 당해연도에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지 아니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운송비를 보전, 정산코자 할 경

우에는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년도 실적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적용한다.

○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 산출기준 :

$$\text{실적치} \times \frac{\text{보전대상년도의 World Scale} \times \text{평균운임요율}}{\text{최근년도의 World Scale} \times \text{평균운임요율}}$$

- 평균운임요율은 Tanker Charter Record 지에 게재되는 Average Spot Freight Rates로 한다.

(2) 추가금융비의 지급기준

가) 원유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 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하여는 석유정제업자가 해당지역으로부터의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수송기간과 당해사가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수송기간의 차이에 따른 금융비 추가부담을 아래 기준에 따라 매항차별로 산출 보전하되 연말에 정산한다.

○ 항차별 보전기준 : 유잔스 실지급이자 ×

$$\left[\frac{\text{다변화원유도착기간} - \text{중동원유의 전분기 평균도착기간}}{\text{당해원유의 유잔스사용일(이자발생일 기준)}} \right]$$

○ 연말정산기준 : 유잔스 실지급이자 ×

$$\left[\frac{\text{다변화원유도착기간} - \text{중동원유도착기간}}{\text{당해원유의 유잔스사용일(이자발생일 기준)}} \right]$$

나) 당해연도에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금융비를 보전, 정산코자할 경우의 중동지역으로부터의 도착기간은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 연도실적치를 적용한다.

(3) 수입장려금의 지급기준

원유도입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입 장려금은 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하여 1 배럴당 0.7\$에 통관일 이내의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1 배럴당 0.15\$은 수입금 납부시 우선 지급하고, 잔여 0.55\$은 매항차별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 및 추가금융비를 보전할 시에 지급한다.

(4)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대상

이 고시에서 원유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이란 함은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입장려금은 원유도입선 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정부, 국내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 또는 산유국의 국영석유공사와 장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84년 4월 9일 이후 통관하는 석유분부터 적용한다.
2. 동력자원부고시 제83-17호(83. 6. 30), 제83-25호(83. 10. 4), 제83-28호(83. 11. 25) 및 제83-29호(83. 12. 13)는 이 고시 시행일 이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

(용)석유사업기금조성을 위한 수입금납부필증					처리기간
					즉 시
① 수입자		⑤ 수입승인번호			
② 수입금납부일자		⑥ 수입승인일자			
③ 수입금납부일자		⑦ 수입승인일자			
④ 납부필증일련번호		⑧ 수입추천번호			
		⑨ 수입추천일자			
		⑩ 수입추천자			
⑪ CCCN부호	⑫ 품명 및 규격	⑬ 선하증권서상의 수량(Bbl)	⑭ 수입금납부수량(Bbl)	⑮ 수입금납부액	

석유사업법 제17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한국석유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석유사업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으로 영수함

19

은 행 장 ㉑

5108-11민
84. 4. 10 승인

210mm×297mm
(타자용지 34g/m²)

동력자원부고시 제84-10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제 3 항, 제 4 항 및 제 5 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요령

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 3 항,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 및 환급요령을 동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년 4월 16일
동력자원부장관

제 1 조 (수입금의 납부) 영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되는 석유중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한 석유에 대한 수입금은 이를 그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되 아래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석유도입량-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당해 석유통관시점에서 적용되는 1 배럴당 수입금×통관일의 환율

제 2 조 (가산금의 납부) 영 제15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되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 (가산금 부과대상물량)×당해석유 통관시점에서 적용되는 1 배럴당 수입금×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 $\frac{90}{360}$ ×통관일의 환율
- 가산금 부과대상물량 : (석유도입량-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국내에 공급하는 나프타생산에 소요된 석유량)
-국내에 공급하는 나프타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은 정부가 영 제1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도입계약 승인시 적용한 수율을 기준, 산출한 나프타생산량에서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된 나프타량 및 석유정제업자가 수출할 것이라고 제출한 분을 차감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석유량으로 한다.

제 3 조 (수출의 범위) 영 제15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무역거래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

는 승인된 수출. 다만, 운환유수출 및 해외 일시 보관에 따른 특수수출입(Time Exchange)은 제외한다.

- ②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석유제품으로서 외화로 대금결제가 되는 분
- ③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미합중국 군대에 외화로 납품하는 석유제품

제 4 조 (수입금의 환급) ① 영 제15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입금은, 매월별로 아래산식에 의거 산출하며 수출 또는 영 제15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생산 공급직전 월에 통관된 석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 ㉠ 원유를 정제하여 수출 또는 생산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 × (환급대상석유제품을 생산한 석유정제업자의 직전 월 통관분 원유에 대한 원유도입선다변화 촉진장려금 감액징수전 수입금의 원화납부액 ÷ 환급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할 석유정제업자의 직전월 통관 원유량)

②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으로 운환유 기유, 조유를 생산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며 소요원유에 대한 수입금은 ㉠호에 의거 산출한다.

- 당해월의 투입원재료량(환급대상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을 33.74%로 나눈 양)이 직전월에 통관한 병커씨유 수입량 이하인 경우 환급대상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 전량을 소요된 수입석유제품으로 하여 ㉠호의 산식을 적용하되 ㉠호의 원유에 대한 수입금 및 통관원유량을 병커씨유에 대한 수입금과 통관 병커씨유량으로 하여 산출한다.

○ 당해월의 투입원재료량이 직전월에 통관한 병커씨유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 직전월통관분 병커씨유에 33.74%를 곱한 물량을 소요된 수입석유제품으로 하여 상기와 같이 산출하고 소요원유는 투입원재료량이 소요된 수입석유제품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33.74%를 곱한 물량으로 한다.

○ 병커씨유 수입량은 유헴함량이 2.5W%를 초과하는 병커씨유에 한하되, 직전월에 통과한 병커씨유 수입량이 당해월의 투입원재료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소진될 때까지 익월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되는 석유증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후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환급할 수입금은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 × (당해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1배럴당 수입금)

③ 수입금의 환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을 이행한 자. 다만, 수출대행인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석유제품 공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석유제품공급자로 하되 수출을 위탁한 자나 석유제품공급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위탁한 자와 수출자가 합의한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유헴기유, 조유 및 나프타생산공급의 경우에는 동제품을 생산 공급한 자

제 5 조 (환급대상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 환급대상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은 환급대상 석유제품량(단위: 배럴)에 기준소요량 1.04를 승한 것으로 하되, 유헴기유 및 조유의 경우에는 무역관리규정 제26-3조에 의한 소요량 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소요량 증명상의 소요량으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되는 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석유량은 1 ÷ (당해석유도입계약서에 명시된 석유제품의 총수율)을 기준소요량으로 하되 총수율이 96.15% 이하인 경우의 기준소요량은 1.04로 한다.

제 6 조 (환급대상 석유제품량의 산출) 환급대상 석유제품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수출량: 수출면장상의 물량
2. 나프타생산공급량: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전산자료 및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구한 별지서식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 단위로 산출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판매한 물량은 제외(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 나프타의 수입물량(통관기준)은 수입된 당해월에 모두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사의 나프타공급물량에서 공제하되 수입물량이 공급물량 보다 더 클 경우에는 수입물량이 전량공제될 때까지 익월 공급물량에서 계속 공제

3. 유헴기유 조유생산공급량: 세급계산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매월단위로 산출하되 해외에서 수입판매한 물량은 제외(수입물량 공제는 상기 나프타의 경우 준용)

부 칙

- ① 이 고시는 198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는 1984년 4월 9일 이후 통관되는 석유분부터 적용한다.
- ② 동력자원부고시 제83-18호(83. 6. 30)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

수요처의 나프타구매 확인서

1. 나프타구매자 인적사항
 ○ 사 업 자 명:
 ○ 사 업 자 번 호:
 ○ 대 표 자:
 ○ 사업주소제지:
2. 공급 정유사명:
3. 나프타구매 물량: (단위: 배럴)

구 매 년 월	구 매 물 량	비 고
198. 월		

상기 물량을 당해 정유사로부터 정히 구매하였음을 확인함.

1984. . .

확인자: 사업자명:
 대표자: ㉠

동력자원부고시 제84-11호

신고대상인 원유의 구입계약 및 수송계약에 관한 고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원유의 구입계약 및 수송계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년 4월 25일

동력자원부장관

1. 신고대상인 원유구입계약은 도입하고자 하는 해당 유종의 가격이 공식판매가격 이하이고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1984년도 내수용 소요 원유물량의 20% 범위 이내인 국제 현물시장에서의 원유구입계약으로 한다(특정항차의 도입하고자 하는 계약물량의 과반수가 연간 신고대상의 잔여물량에 해당할 경우를 포함함).

○석유정제업자별 1984년 내수용 소요원유물량

(주)유공 81.1백만배럴, 호남정유(주) 61.2백만배럴, 경인에너지(주) 15.0백만배럴, 쌍용정유(주) 18.3백만배럴, 극동석유(주) 3.6백만배럴

2. 신고대상인 원유수송계약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 운임이하의 항차별 원유수송계약으로 한다.

○운임산출기준

당해사의 도입국가별 전년도 항차별 수송계약에 의한 평균운임×

$\frac{\text{해당월의 World Scale} \times \text{전월운임요율}}{\text{전년도 평균 World Scale} \times \text{전년도 평균 운임요율}} \times 1.18$

- 운임요율은 Tanker Charter Record지에 게재되는 Average Spot Freight Rates로 한다.

- 당해사의 도입국가에 대한 전년도 항차별 수송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타사의 동일 실적적용

다만, 당해 국가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인접국가의 실적적용

부 칙

1. 이 고시는 1984년 4월 9일부터 적용한다.
2. 당부 원유1377-119호(84. 1. 9) 1984 원유도입 방침 시달이후의 국제현물시장에서의 원유수입 추천분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職務에는 본분을,

生活에는 분수를